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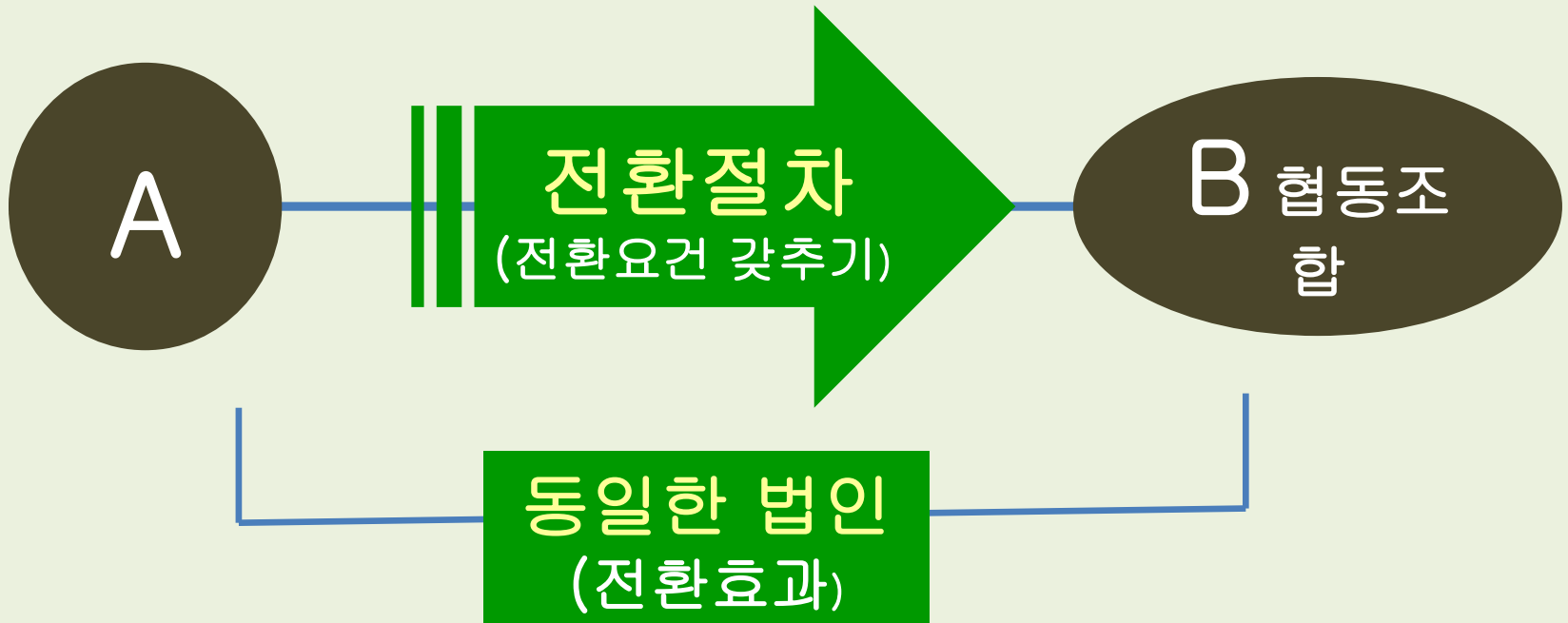
협동조합 전환절차 안내

2012. 11. 2

재단법인 동천

상임변호사 양동수

협동조합으로의 전환



※ 동일법인 간주의 효과를 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 = 전환절차

A: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; 전환 전 조직, 전환 전 기업 등

B: 전환 후 협동조합; 신설 협동조합, 연합회 등

동일법인 간주의 효과



•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

“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
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”

•효과 일반:

: A라는 법적 주체와 B라는 법적 주체 양자에 대하여 동일성을 인정

→ A의 권리·의무가 곧 B의 권리·의무임

→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



• 전환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는가?

명칭이 협동조합 등으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

→ 재산 및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음

다만, 각종 명부 상 표시변경 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등 세금
지분을 정리 시 주식을 양도·양수함에 따른 주주 개인에 대한 세금

동일법인 간주의 효과

Q

- 인·허가,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(業歷)이 승계되는가?
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원래 갖고 있는 경력으로 그대로 인정됨

다만 명의표시는 변경 필요

또한 기존 법인을 규율 하던 법률 기타 규정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

→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할 것

Q

- 근로관계가 존속되는가?
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전환 후에도 그대로 유지

만약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, 양 당사자들에 의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적법한 사유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제, 해지가 필요함.

동일법인 간주의 요건



• 일반협동조합의 경우

- 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(2012. 12. 1.)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일 것
- ②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(2012. 12. 1.)부터 2년 이내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
-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었을 것
- ④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것
- 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칠 것
- ⑥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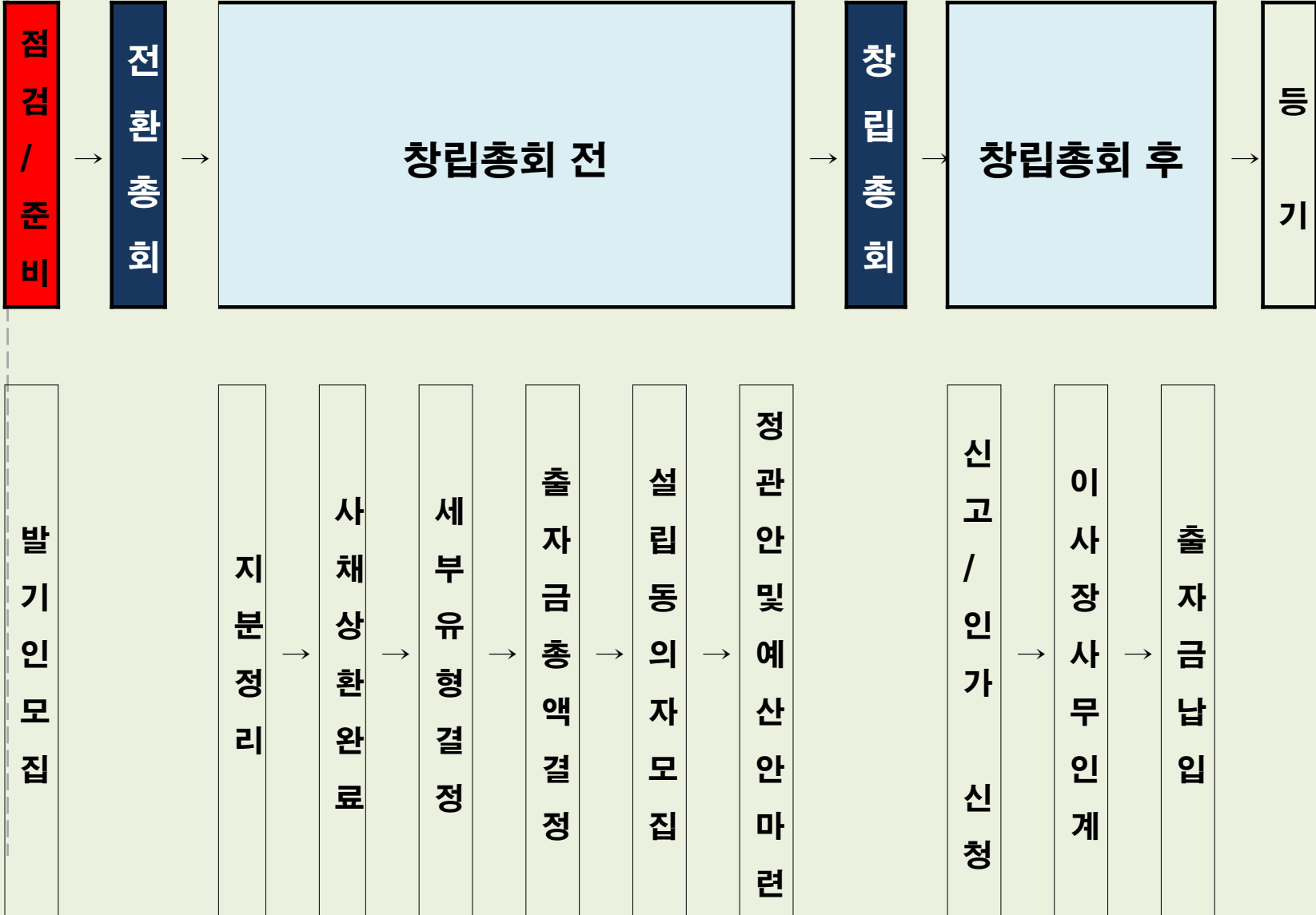
동일법인 간주의 요건



•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

- 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(2012. 12. 1.)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
- ②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(2012. 12. 1.) 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
-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었을 것
- ④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
- ⑤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칠 것
- ⑥ 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것

동일법인 간주의 절차



전환총회 전 점검사항

1

•전환이 가능한 법적 주체인지를 점검

첫째,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?

•[사업자인 경우]

개인사업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공동운영하는 개인사업자 (O)

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(X)

← “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전환 불가

[법인인 경우]

상법상 회사(주식회사·유한회사·유한책임회사·합자회사·합명회사) (O)

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(O)

각종 특별법상 법인(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)(O)

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과 재단법인 (X)

전환총회 전 점검사항

1

[법인 아닌 법인사업자]

기존 조직형태가 법인은 아니나 법인사업자인 비영리민간단체 (O)
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(O)

둘째, 법인 설립 혹은 사업개시 시점은 언제인가?

2012년 11월 30일 전에

[사업자] 사업자 등록!

[법인] 법인의 실체!

전환총회 전 점검사항

2

-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지를 점검

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

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까지 완료해야 함

따라서 전환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

전환총회 전 점검사항

3

-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는지를 점검

첫째, 기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상 **업태**와 = 신설 협동조합의 **업태**

* 통계청 홈페이지(<http://kostat.go.kr>)에서 확인

둘째, 기존 조직의 **사업목적**이 구성원의 **복리증진**과 **상부상조** 또는 이와 유사할 것

* 사업목적이 명시된 정관, 규약, 운영규칙, 회의록, 주주명부

셋째,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(3)-가항 및 나항)을 충족했을 것

법 시행 당시(2012. 12. 1)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

예) 회의록 - 2012년 12월 1일 전에 개최된 회의

전환총회 전 점검사항

4

- 설립최소기준을 갖춘 후 전환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

[설립최소기준] → 전환총회 [필수목적사항] 중 보고사항

-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설립최소기준
 - i 5인 이상의 발기인
-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
 - i 5인 이상의 발기인
 - * 5인은 생산자, 이용자, 직원,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중 둘 이상의 유형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
- 사회적협동조합 중 보건의료사회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
 - i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의 **설립최소기준**
 - ii 최저출자금 **5만 원 이상**을 출자한 설립동의자 **500인 이상**
(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5만원 이상 낼 필요 없음)
 - iii 출자금 **1억 원 이상** 확보

전환총회 전 점검사항

5

• 기타 준비사항

“점검하고 준비했다면 이제 전환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아래 안내서에서 설명하는 절차들은 부담이 크지 않는 선에서
가급적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”

특히

첫째, 전환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

예)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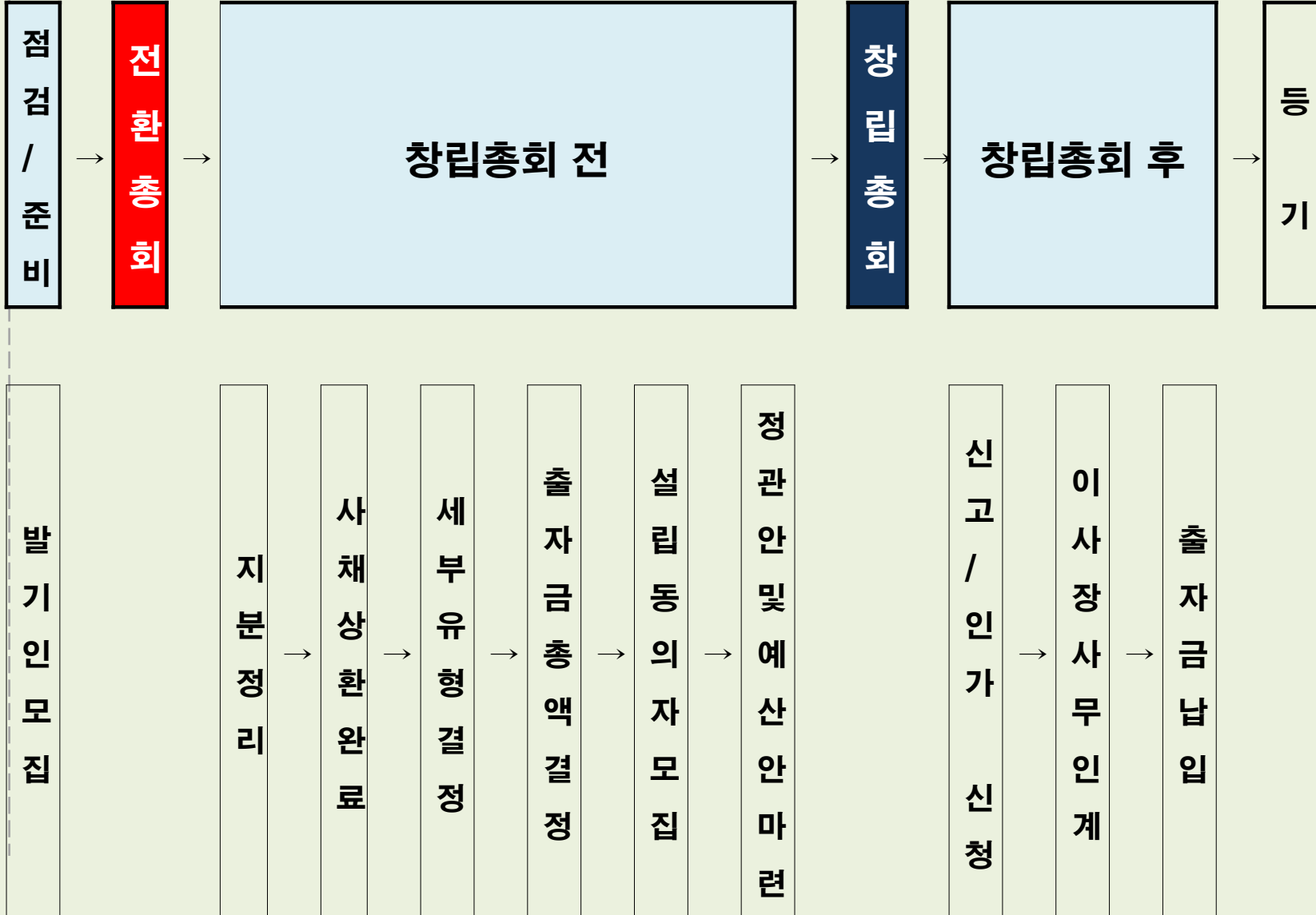
둘째, 협동조합의 세부유형 결정

※ 협동조합의 유형

소비자협동조합, 직원협동조합, 사업자협동조합

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,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

동일법인 간주의 절차



전환총회



- 전환결의 및 전환총회란?

“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기”

- 갈아 입는 방식 2 가지

1. 해산 + 청산: 청산(O) 권리·의무 이전(O)
2. 조직변경; 전환: 청산(X) 권리·의무 이전(X)

- 조직변경결의 = 전환결의

→ 전환결의를 하기 위해 여는 총회가 전환총회

- 전환총회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?

- i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해당 조직의 정관
- ii 법률 또는 정관이 없는 조직의 경우 업무지침

전환총회

1

• 전환총회 소집 결정 및 청구

이사회의 경우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정

[주식회사의 경우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]

-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 + 주주 전원이 동의
- 총회 일에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전환을 결의
(대법원 사후적 판단: 전환결의 유효)

전환총회

2

• 전환총회 소집 통지

[전환총회 소집통지의 일시 및 방법]

[전환총회 소집통지의 내용]

[주식회사의 경우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]

-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 + 주주 전원이 동의
- 총회 일에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전환을 결의(대법원 사후적 판단: 전환결의 유효)

[전환총회 소집통지의 내용]

- 전환총회의 일시 및 장소
- 총회의 목적사항(보고안건 및 의결안건) ☞ [전환총회 필수목적사항]
- 전환총회에서 의결권이 부여되는 자격 ☞ [전환총회 의결권자]

전환총회



☞ [전환총회 필수목적사항]

[일반 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하는 경우]

1. 의결안건: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함을 결의
2. 보고안건: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 이상을 확보했음을 보고

[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하는 경우]

1. 의결안건: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함을 결의
2. 보고안건: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 이상을 확보하고 이 중 생산자, 소비자, 직원, 자원봉사자, 후원자 유형이 둘 이상 참여함을 보고

전환총회



[전환총회 의결권자]

	조직 형태	구성원자격	의결권
법인인 법인사업자	주식회사	주주	지분에 상당하는(비례하는) 의결권
	유한·합자·합명회사	사원	지분에 상당하는(비례하는) 의결권
	비영리사단법인	회원	1인 1의결권
	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	모법인의 회원	1인 1의결권
	특별법상 법인	회원 또는 조합원 등	1인 1의결권
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	비영리민간단체	회원	1인 1의결권
공동운영 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	등재된 모든 사람	1인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, 의결권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결권
	공동운영 ※사업자등록증에 1인이 등재되었 더라도 사실상 동업인 경우	동업자	1인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, 의결권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결권

전환총회

Q

• [사례] 의료생협의 전환총회에 관한 쟁점

질의: 조합원수가 5000명이 넘는 의료생협의 경우 현실적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2/3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이와 같이 **구성원의 수가 많아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법인의 경우 전환이 가능한가요?**

대의원총회를 열어 개최할 수는 없나요?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?

1. 서면에 의한 결의를 통해 전환 가능

* 총회 소집 절차는 필요함

* 전환 결의는 대의원총회에서 불가능

2. 의결권 위임(대리)에 의한 결의의 한계(1:1인에 한정)

전환총회

3

• 전환총회

전환총회 [필수목적사항] 중 의결안건

: '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
협동조합으로 전환함'에 대하여 의결

* 의결정족수: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

전환총회

Q

• [사례] 전환결의 성립 여부

질의:

주식회사의 주주 9명 중 6명은 전환에 찬성하고
3명은 전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전환에 찬성하는 6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총주식수의 55%,
전환에 반대하는 3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총주식수의 45%입니다.

즉, 인원수로 보면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
주식수로 보면 3분의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

답: 전환을 위한 결의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.

전환총회

Q

• [사례] 전환결의의 적법성

질의:

주식회사의 **주주 9명 중 6명은 전환에 찬성하고 3명은 전환에 반대**하고 있습니다. 9명 모두 동일한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전환에 반대하는 3명 중 2명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분을 정리하고 탈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나머지 **1명의 반대주주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**며, 만약 전환을 할 경우 법원에 전환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태세입니다.

이런 경우 전환을 강행한다면 **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?**

답:

1. 전환결의의 효력은 유효합니다.
2. 반대주주가 회사나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성실히 그 절차를 거쳤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.

*신고 내지 인가 신청 전까지

전환총회

4

• 총회 의사록 공증

* 의사록, 진술서, 위임장, 구성원명부

전환총회

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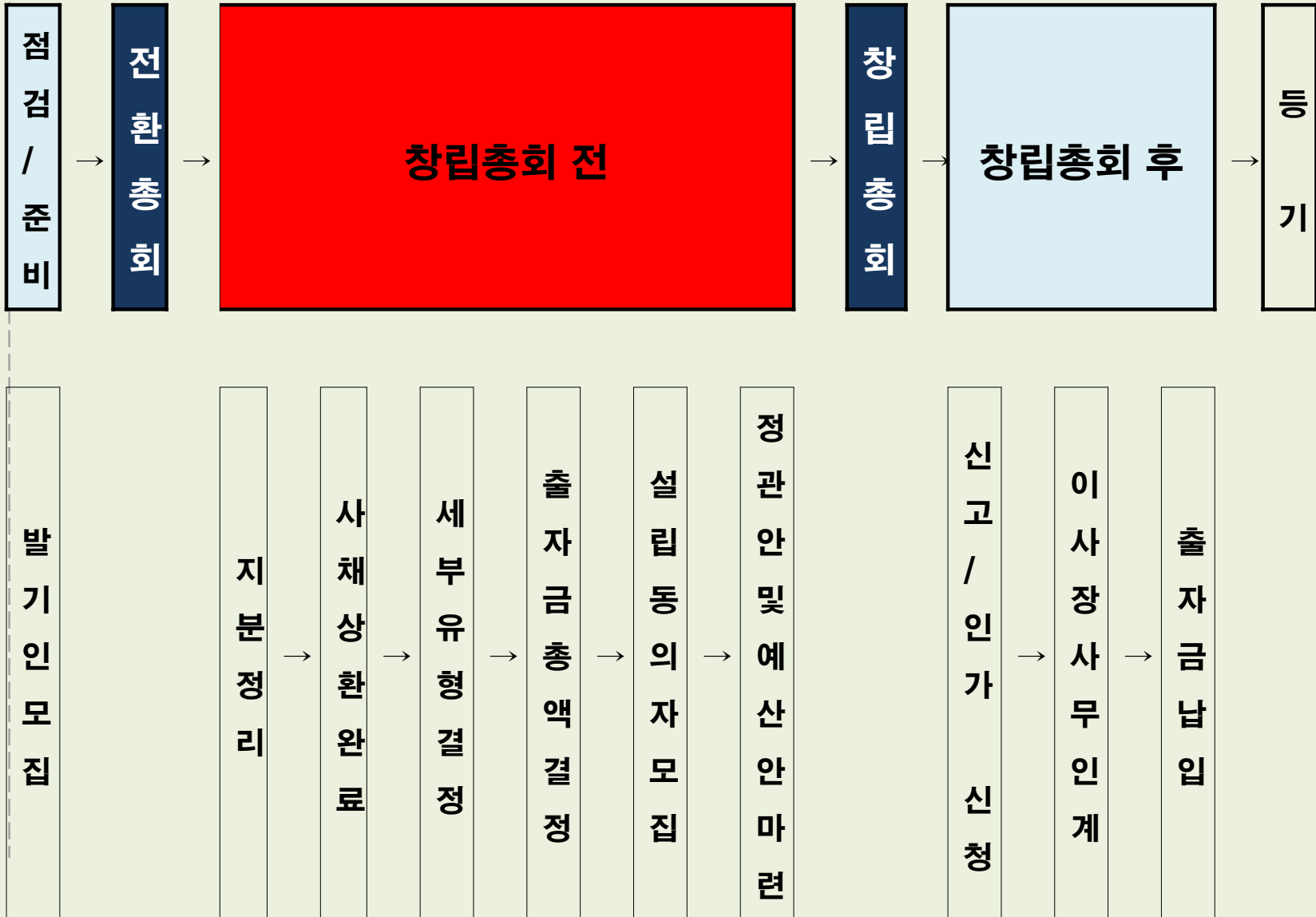
• 채권자보호절차 이행

- **기한**: 전환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**2주 내에** 거쳐야 하는 절차
- **취지**: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**분쟁을 미연에 방지**
- **효과**: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**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**

세부 절차:

- i) 전환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**2주 내에**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**일정한 기간(1개월 이상)**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**공고**
- ii)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**일정한 기간 (1개월 이상)** 내에 **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**
- iii)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

동일법인 간주의 절차



창립총회 전 준비사항



• 창립총회란?

전환을하기로 결의한 후에 정관 및 예산안 승인, 임원 선임 등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열리는 총회

따라서 창립총회 의결권자는?

“ 전환 후 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 자
(신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는 자)”

창립총회 전 준비사항



• [사례]

질의

: A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A법인의 구성원과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는 자가 거의 동일한데다, 구성원 수가 상당하여 **두 차례에 걸친 총회를 소집하기가 부담**이 됩니다.

하루에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?

답

1. 전환총회와 창립총회가 모두 필요합니다.
2. 보통의 경우라면 일정 기간을 두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.
3. 그러나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전에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**두 총회를 한 날에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** 다만 **전환총회를 먼저 개최**하여야 합니다.

창립총회 전 준비사항

1

- 지분정리

지분 정리 기한은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전이므로
창립총회 후에도 가능합니다.

다만 전환이 결의되었다면 가급적 **빨리**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창립총회 전 준비사항

2

- 사채상환

협동조합은 사채를 발생할 수 없기 때문

역시 신고 또는 인가신청 전이라면 창립총회 후에도 가능하지만 창립총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하게 되므로 **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.**

창립총회 전 준비사항

3

•출자금 총액의 결정 및 부족액 납부

1. 출자금 총액: 순재산액
2. 주식회사의 경우 순재산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전환 결의 당시 이사와 주주가 연대하여 그 **부족액을 납부**해야 합니다.
3. 한편 **출자금 총액은** 등기를 통해 **외부에 공시**됩니다.

창립총회 전 준비사항

4

•정관안 및 예산안 마련

협동조합기본법상 정관규정사항과 세부유형별 정관례 5종 참조

- △ 소비자협동조합 △ 직원협동조합 △ 사업자협동조합
- △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△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

창립총회 전 준비사항

5

•설립동의자 모집

- 정관이 규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, 즉 조합원이 될 자 이후 개최될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.
- * 직원협동조합: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함
(즉 3분의 2이상이 조합원이자 직원)
- *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
단, 전환총회 필수목적사항 중 보고안건이므로
지금단계에서는 문제되지 않음

동일법인 간주의 절차



창립총회

1

• 창립총회 소집결정 및 공고

[창립총회 소집공고의 일시 및 방법]

창립총회 개최 전에 일정기간 이상

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예) 일간지 게재

[창립총회 소집공고의 내용]

i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

ii 창립총회의 목적사항(보고안건 및 의결안건)

☞ [창립총회필수의결안건]

iii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이 부여되는 자격

☞ [창립총회 의결권자] 참조

창립총회



☞ [창립총회 필수결의안건]

- ① 정관승인의 건(*대의원 총회에서 의결 불가)
- ② 사업계획승인의 건
- ③ 임원 및 감사 선임의 건
- ④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
창립총회 소집결정 및 공고

☞ [창립총회 의결권자] ≠ 전환총회 의결권자

전환 후 협동조합의 정관이 규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자
전환 전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조직형태와 관계없이
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결정

창립총회

2

- 창립총회

의결정족수: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**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**
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

창립총회



•[사례} 창립총회와 대의원총회

질의

: 조합원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 (예: 의료생협이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) **대의원총회로 창립총회를 대신할 수는 없나요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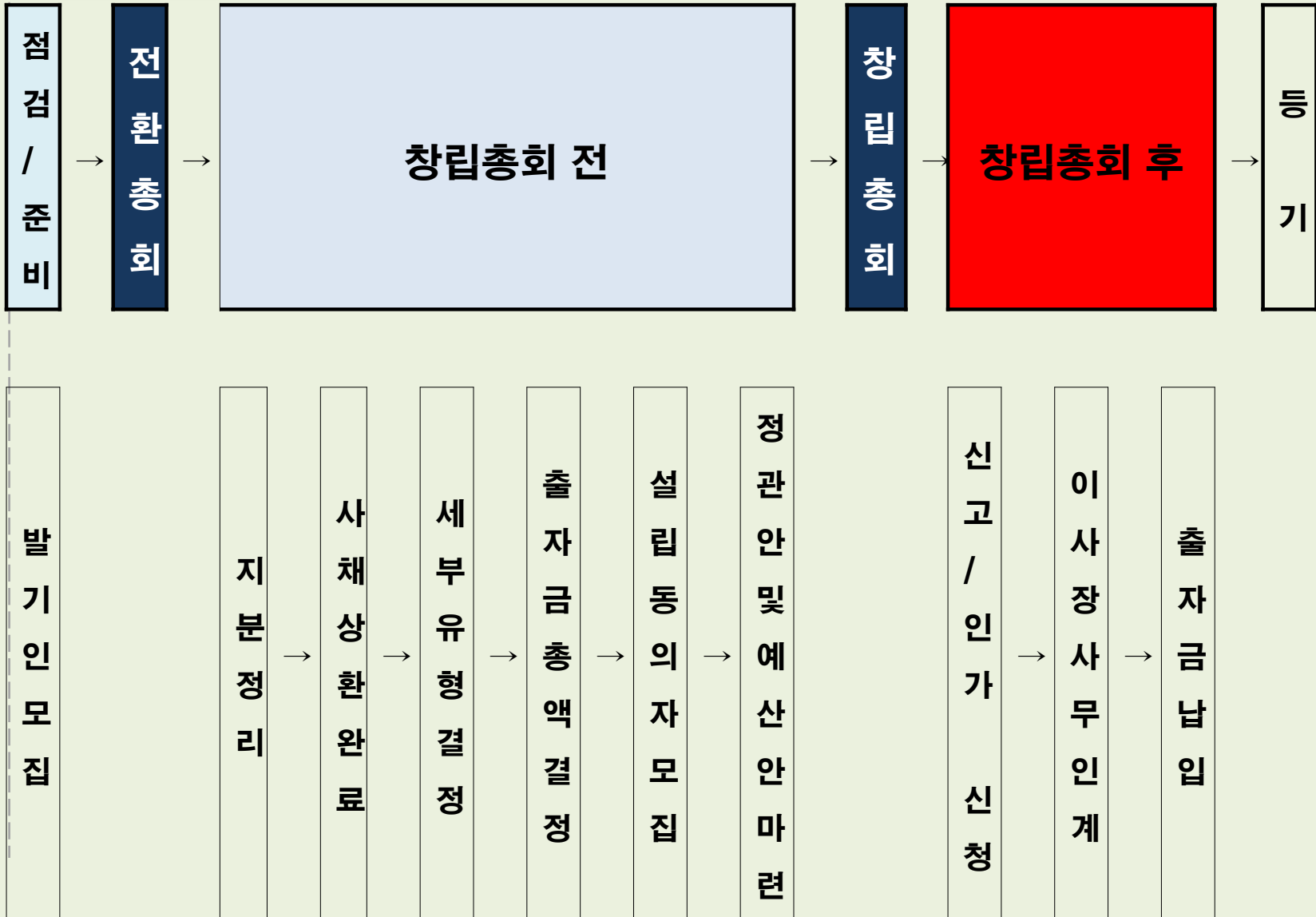
답변:

1. 창립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**대신할 수 없으며,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함.**
2. 다만 [필수의결안건] 중 '① 정관'만 창립총회를 통해 승인(의결)하면, 그 외의 의결 및 보고안건은 새로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,보고 가능

※ 이때의 대의원총회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정관에 대의원 자격 내지 요건이 규정되어 있거나 창립총회에서 기존 대의원이 승계됨을 의결하여 구성된 신설된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말합니다.

※ 이 경우 전환절차는 전환총회(전환여부 의결) - 창립총회(정관승인 등) - 대의원총회(정관 외 창립총회 의결사항)의 순으로 진행됩니다.

동일법인 간주의 절차



창립총회 후 절차

1

• 지분정리

“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협동조합 전환 후 출자금액으로 평가됩니다. 따라서 지분 정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. 다만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개인별 최소출자규모를 유지하는 선으로 기업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”

[지분 정리가 필요한 경우]

- i 주주(사원) 1인의 주식(지분)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
- ii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경우
- iii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

※ 한편 기존에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, 개인별 최소출자규모를 유지하는 선으로 지분구조를 정리하고자 한다면

창립총회 후 절차

1

[지분정리방법]

1. 다른 주주에게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처분하는 방법
2.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방법
 - i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함.
 - ii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.
 - iii 회사가 매수한 자사주 정리

창립총회 후 절차

1

[지분 가액의 평가]

- i **주주와 회사** 간에 가액에 관하여 **협의**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액
- ii **협의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** 다음의 가액으로 결정됨 → “시가”
 - 상장회사의 경우 '전환결의일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2월간, 1월간 및 7일간의 평균가격을 재차 평균한 가액'이나 **'시가'에 상당하는 가액**
 - 비상장회사의 경우 '시가', 시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'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시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'
 - ※ 한편 세법상으로는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가액을 산정합니다(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).
 - 이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 또는 저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비상장주식거래가 일어날 경우 증여세, 법인세 등이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창립총회 후 절차

1

[지분정리 시기]

지분정리는 **전환 신고 또는 인가신청 전**에 완료해야 합니다.

창립총회 후 절차



[사례] 출자금액의 평가 및 출자 시 부과되는 세금

질의

- : 자본금이 4억원(주식 8만주), 잉여적립금이 20억으로 자기자본이 24억원, 부채는 40억원, 브랜드 가치가 10억원인 회사 주식을 1만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전환 후 협동조합에 전액 출자
1. **주식 전환으로 출자한 금액은 얼마로 매겨져야 하는지요?**
 2. 이때 **세금이 발생하는 문제**가 생기지 않을까요?

답

1. 출자한 금액: 3억 원

출자금총액(=순자산) X 주식비율 = 출자금액입니다.

24억 원 X 8분의 1 = 3억 원

2. 세법상 전·후의 총자산은 24억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**출자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**

창립총회 후 절차



[사례] 출자금액의 평가 및 출자 시 부과되는 세금

질의

: 자본금이 4억원(주식 8만주), 잉여적립금이 20억으로
자기자본이 24억원 부채는 40억원, 브랜드 가치가 10억원인 회사

주식을 1만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전환 후 협동조합에 전액 출자한다고
가정하면, 주식 전환으로 출자한 금액은 얼마로 매겨져야 하는지요?
이때 세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?

답

1. 출자한 금액: 3억 원

순자산 = 출자금 총액

순자산(출자금총액) X 주식비율 = 출자금액입니다.

24억 원 X 8분의 1 = 3억 원

창립총회 후 절차

2

- 전환 설립 신고 및 인가

1. 협동조합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**시·도지사**에 신고
2.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**관계 부처**의 인가 신청

* 신고·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

창립총회 후 절차

3

- 이사장 사무인계

설립신고 및 인가를 받은 후 발기인 →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 인계
그러면, 이사장은 납입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
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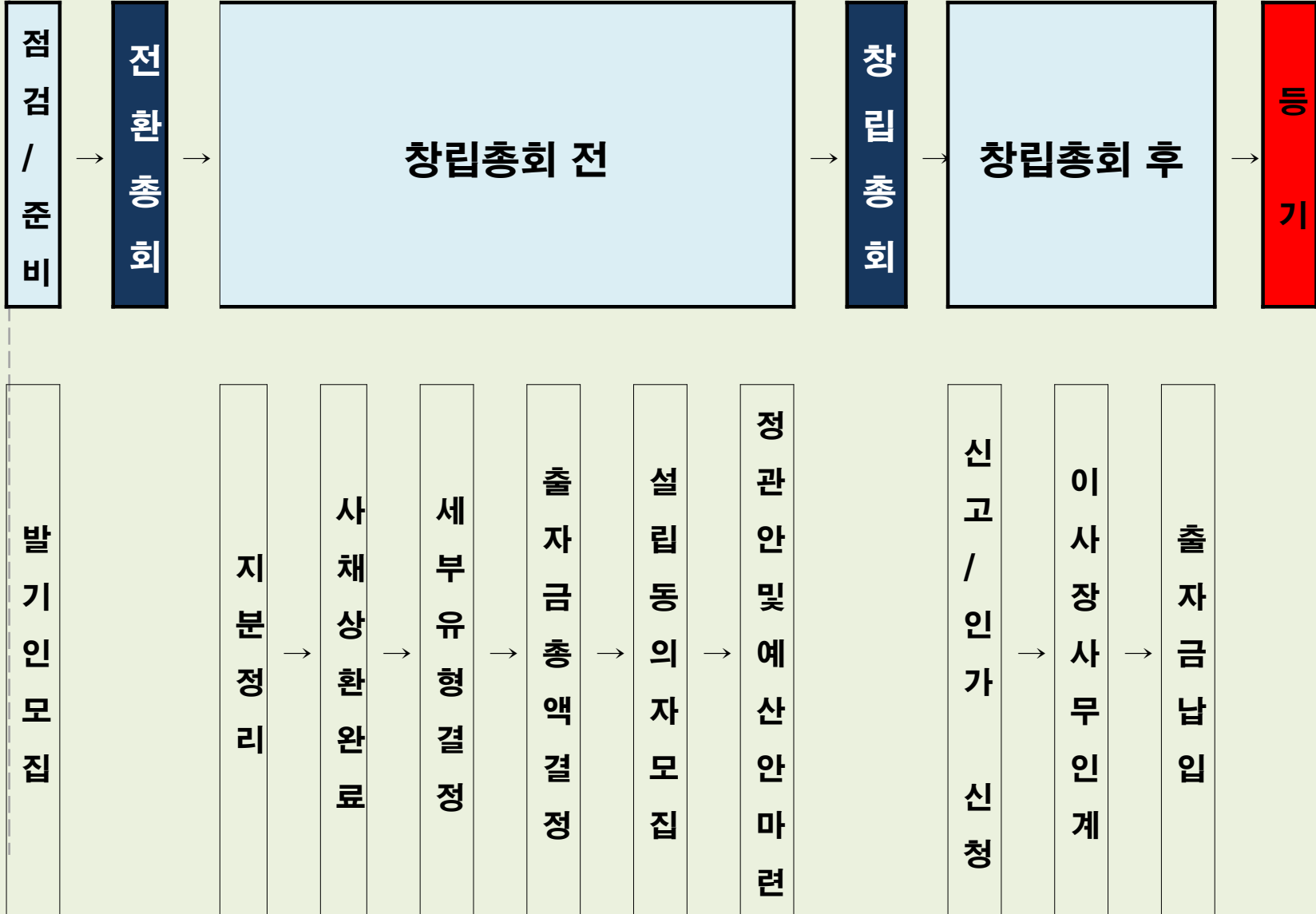
4

- 출자금납입

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.

- * 현물출자자? 인도 +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협동조합에 제출
- *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? 납입 절차 필요 없음

동일법인 간주의 절차



등기



등기는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**14일 이내에** 신청해야 함.

협동조합은 2014. 11. 30.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,

연합회는 2013년 11월 3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함

전환 등기가 이루어지면 구등기가 자동으로 말소 처리되며,
신규설립일자로 등기되나 새로운 등기에 전환이 표시되게 됩니다.

전환 완료!

!

오늘부터 우리 기업은
법도조합니다. 😊



낮은 곳을 찾아가는 따뜻한 시선과
공익법률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통해
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.